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0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7. 원고를 상대로 경산시 C 대 1,045㎡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 중 D호, E호에 관한 2016. 5. 11.자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분

양대금 3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7380호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원고 소유의 자동차

2대에 대하여, 2017. 12. 14. 같은 법원 G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각 경매사건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경매사건' 및 '이 사건 제2

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24.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2017나21399호로 항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8. 2. 13.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제1 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2 경매사건의 취하 조건으로

480,000,000원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9. 'H이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같은 날부터 2018. 6. 30.까지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차용일로부터 월 2%의 이자를 붙이기로 하되 사전 협의 시 1회

연장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차용증에는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원고의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 명의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 5. 9.자 차용증이 존재하는데(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 그 하단에는 피고의 자필로 "위 4,000만 원은 1씨가 출라

했다"는 문구가 피고의 자필서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일금 40,000,000원정

위 금을 정히 차용하고 2018. 6.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기한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일로부터 월 2%의 이자

원고의 부동산을 은행 대출 다음 2순위로 설정한다.

(중략)

2. 위 금은 이 사건 제2 경매사건으로 경매 진행 중인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매취하조건으로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I 사장으로부터 받는 돈으로 원고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아.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제2 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자. 원고는 2018. 5. 10. K에게 250,000,000원을,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6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카.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4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2018. 5. 10. 지급한 400,000,000원 외에 40,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40,000,000원은 I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의 기망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41,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41,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8. 7.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440,000,000원 외에 피고가 작성한 추가금액 40,000,000원은 I이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6. 3. 피고에게 'I이 주기로 하였다면서 2018. 5. 9.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거짓으로 추가금액과 이자를 받아 갖고 440,000,000원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해지비용 3,400,000원을 받아갔으니 43,400,000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경매사건까지 모두 취하하는 대신 합계 4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2. 23. 40,000,000원, 2018. 5. 10. 4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1 차용증과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내용 중 대여금액변제기일이자율이 동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원고의 4촌 매형인 사실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9.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L조합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게 '2018. 5. 9. 이 사건 제2 경매사건을 취하하면서 잔여금 40,000,000원을 2018. 6. 30.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한다고 약속하였으나 1달 더 연기하기로 하였으니 2018. 7. 30.까지 원리금 합계 42,800,000원을 지급하라'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도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4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미지급한 4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8. 7. 9. 41,600,000원을 마저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1,6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차용증이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담보로 교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48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2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48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00,000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40,000,000원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금융기관 다음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I이 이를 매수하게 되면 I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초안으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내용, L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개인에 불과한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I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I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부분은 결과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설명하면서도 I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만한 경위나 유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고의 말을 믿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말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제1 차용증에는 이 사건 제2 차용증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4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제2 차용증과 달리 I이 4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I의 채무부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었다면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제1 차용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⑤ 원고가 2018. 7. 9. 피고에게 지급한 41,600,000원 중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원은 4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2개월 치 이자와 같은 금액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일

[별지]

목 록

1. 경주시		전 759㎡
2. 경주시		전 50㎡
3. 경주시		답 351㎡
4. 경주시		답 592㎡
5. 경주시		도로 7㎡
6. 경주시		답 889㎡
7. 경주시		답 150평
8. 경주시		답 507㎡

끝.

1)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